



한국 법엔 없는 회사 표기 고객이 좋다는 대로 해주자!



임 선 혜 ■ 법무사(서울중앙회) ·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졸업

외국인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소규모의 외국인 투자법인도 많이 생겨나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기신청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필자가 실무에서 외국인 고객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본 칼럼을 게재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상법에서 쓰이는 임원 직급 및 기타 용어에 대한 영어표현을 정리한다. 외국인 임원으로부터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신청 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영어 표현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쓰이고 있다.

- 대표이사 **representative director**
- 사내이사 **inside director**
- 사외이사 **outside director**
- 기타 비상무이사 **nonexecutive director**
- 감사 **auditor**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representative of Korean branch office**
- 주주 **shareholder**
- 발기인 **promotor**
- 청약인 **subscriber for shares**
- 정관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 정기주주총회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임시주주총회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representative director” 외에도 “president” 또는 “CEO”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주식회사 상호 표시에 영어 상호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주식회사는 영어 및 로마자 상호표기가 가능해지면서 영어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corporation”, “Inc”, “Incorporated” 또는 “company limited(약어 Co., Ltd.가 더 많이 쓰인다)”로 주로 표기한다. 유한회사는 “limited” 또는 “company” 등으로 표기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영어 표시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딱 맞는 외국의 회사는 없고, 주로 비슷한 형태가 있을 뿐이다. 영어권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는데 주로 미국 고객들이 많다보니, 미국식 영어표현으로 맞추려고 하곤 한다.

특히 요즘은 주식회사 영어 상호를 병기할 때 미국 고객들이 “LLC”로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limited liability company”로서 미국 회사법에서 분류한 법인의 한 종류다.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 가까운 형태이다. “LLC”는 우리나라 상법상에서는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와 더 가까우므로 주식회사에 사용하기에는 어색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똑같이 맞는 것이 없는 이상 고객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영어 상호도 결국 회사의 이름이므로 그 이름을 사용할 고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